

파트너십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규범** · 윤태화***

<요 약>

본 연구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과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5개 이해관계인(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사법부공무원, 교수·연구원)에 따라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인식차이 분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합자조합 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행법상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해석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를 위한 명확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이 한·독 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는 판결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국외투자기구 정의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6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여러 가지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인 집단이 실질귀속자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제어〉 국외투자기구, 사모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합자조합,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하는 것임.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starycho3@gmail.com, 주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thyoon@gachon.ac.kr, 교신저자

I. 서 론

1997년 IMF위기 이후 국외사모펀드(이하 “사모국외투자기구”)들이 국내기업체를 인수하여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한국경제의 재정비를 통해 다시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파트너십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모국외투자 기구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등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소위 “먹튀논쟁”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최근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법원에서 그동안의 과세당국의 과세실무와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2011.12.31. 이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12.31.(시행일, 2012.7.1.)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한 법령을 개정한 바 있는데(법인세법 제98조의6), 법령개정 이후의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사모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구가 있으나¹⁾,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조세조약 적용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러한 판결은 론스타 판결 이후 대법원의 입장을 조약적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학계의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 등 많은 경제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유치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투자를 통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대부분 판례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본 연구는 이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방식, 법적·형식적 소유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 실질적 소유자, 조세조약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인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향후 정책방향 및 법령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조세제도과-56 (2015.11.24.)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II. 사모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

가. 투자구조

투자기구는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파트너십 형태의 사모국외투자기구이며, 이는 대부분의 국외투자형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법적 형태이다.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i)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자금을 모집한 뒤, 모집된 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고, 모은 자금을 투자에 집행할 투자기구로 케이만 군도나 버뮤다 등에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펀드를 설립하고, ii) 해당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권을 갖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갖는 나라에 투자활동 위험을 그 투자대상에 한정하는 유한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 후, iii) 그 투자목적회사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하고, 매각직후 매각자금을 펀드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목적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나. 존속기간 및 이익분배 방식

사모투자기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이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사모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하면 투자자들의 투자회수가 지나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모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10년 안팎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본시장법(제249조의10 제1항 제5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의 존속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정준혁, 2014).

유한파트너십 형태의 사모국외투자기구에 있어서, 일반적인 회사의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한파트너십계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LPA”)에서는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LPA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 (분배의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현금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배당의 지급이 가능할 때, 또는 투자수익의 실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즉시 배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Cumming and Johan, 2013).
- (ii) (분배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분배와 관련한 별도의 절을 통해 아래와 같이 분배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Braithwaite, 2002).

- ① 관리보수(Management Fee)와 같이 GP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
- ② LP의 파트너십에 대한 대여금 상환
- ③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험 없는 투자(risk-free investment)로 발생한 금원의 LP에 대한 우선지급(소위 “우선 지급”)
- ④ 그리고 성과보수조항에 따라 GP와 LP에게 각각 산정된 이익의 지급

위와 같은 내용의 LPA에 의하면 사모국외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그 투자수익을 거의 바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외형적으로는 투자기구가 투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한 후 그 수익을 수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투자수익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시간 내에 투자자들에게 모두 분배되는 것이며, 유한책임사원(LP)과 업무집행사원(GP)은 모두 LPA를 통한 사전약정에 따라 얼마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분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

가. 단체의 분류기준

국외 공동사업체의 분류에 따라 국외 공동사업체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국외 공동사업체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국외 공동사업체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최고세율 22%(3단계 초과누진세율)가 적용되나, 개인(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각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세율 40%(6단계 초과누진세율)가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법상 “법인”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었다. 특히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단체 등의 특성이 혼합된 외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였다. 론스타펀드(미국 사법상 LP)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과세관청은 론스타펀드를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단체 등”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의 영리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분류기준은 2013.1.1.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다.

나.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

단근거는 국내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현행 법인세법상의 실질귀속자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5(실질귀속자) 규정(대통령령 제19328호, 2006.2.9.)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의 개념은 2006.2.9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외국계 펀드 등이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이 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시행 2006.2.9).

(2)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신설 규정

국외투자기구와 관련하여 2011년 말과 2014년 초에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인세법 개정은 당시 국세청장 고시로 집행되고 있었던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를 명확히 법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규정은 그 대상(제98조의6은 배당, 이자, 사용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98조의4는 주식양도차익 등이 대상에 포함됨)만을 달리할 뿐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즉,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특정한 소득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면제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받아 그 명세를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 규정은 국외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동 규정의 문리적 형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또는 비과세·면제의 적용절차를 법령화한 것이며, 동 규정의 내용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질귀속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지 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실질귀속자인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11월 나온 기획재정부의 예규도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누구인가(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외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조세조약 적용규정

(1) 국외투자기구 단계에서의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상 “인(person)”, “거주자(resident)”,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모두에 해당하면 조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상 “인”은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 기타 인적단체를 포함하고, “회사”는 법인체나 조세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형태의 단체를 의미한다(모델조약 제3조 제1항).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당사국에서 ‘납세의무(liable to tax)’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모델조약 제4조 제1항). 한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는 각국의 세법상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국내세법에는 없다. 다만,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실질귀속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질귀속자”와 “수익적소유자”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투자자 단계에서의 조세조약 적용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을 살펴보면, 조약 적용을 위한 일반 요건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한 적용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신청 또는 비과세·면제신청 방법이 국내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투자자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인 투자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조약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98조의4 제4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라. 법원의 판단

(1)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사례

론스타 사례의 핵심 쟁점은 델라웨어주에 유한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된 론스타펀드를 법인세 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론스타 판결 2010두5950(2012.1.27.)에서 대법원은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を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대법원은 라살레 판결(2010두11948, 2012.4.26.), 위니아만도 판결(2010두25466, 2012.10.25.), 뉴브릿지 판결(2010두20966, 2013.7.11.) 등에서 사모국외투자기구는 외국법인으로서 과세실체 및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하였다.

(2)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동원엔터프라이즈 판결 2012두11836(2014.6.26.)에서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타이거유동화 판결 2013두7711(2015.3.26.)에서 대법원은 독일 펀드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소위 ‘가분적 거주자이론’²⁾). 이 판결은 한·독 조세조약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달리 투시과세단체 즉, 펀드의 거주자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해 위 동원엔터프라이즈 사건에서의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법리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2) 윤지현, 2016,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3호 제2페이지에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을 ‘가분적 거주자 이론’으로 명명하고 있다.

3. OECD 과세규범

가. 파트너십 보고서 내용

OECD 산하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이하 “재정위원회”)는 1993년 파트너십, 신탁 및 비법인단체의 조세조약 적용관련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을 신설했으며, 실무그룹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OECD 모델조세조약 적용”(“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 이하 “파트너십 보고서”)이라는 보고서를 1999년 발간하였다.

파트너십 보고서에서는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사법 및 세법의 상이성으로 인해 파트너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대해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구체적인 예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내용이 반영되도록 모델조약의 주석서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모델조약 주석서에 반영되었다.

파트너십 자체가 조세조약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모델조약 제1조는 계약국의 “거주자 (resident)”에 해당하는 “인(person)”만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트너십 자체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파트너십이 a) “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b)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³⁾

이와 관련하여 재정위원회는 파트너십의 경우 조세조약상 “인”에 해당하나, 파트너십 설립지국에서 “투시사업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없고, 이 경우 파트너십 자체는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자기 지분 몫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파트너들의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⁴⁾

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경제의 글로벌화와 IT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하여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라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여러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중 Action 2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효과의 해소(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그 주석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종전 파트너십 보고서의 내용이 OECD의 확고한 입장임을 재차 확인하고, 도관체(transparent entities)의 소득이 조세조약의 목적상 Partnership Report의 원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게끔 하였다.

3) 파트너십 보고서 28문단.

4) 파트너십 보고서 27문단~35문단.

4. 선행연구의 검토

가. 국외투자기구의 법인성

안경봉(2014)과 오윤·임동원(2015)은 유사성원칙보다는 설립지국가의 세법상 취급을 존중하는 OECD의 접근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2년 상법개정으로 합자조합 제도가 신설되었는 바, 현행 상법 하에서 유한 파트너십은 합자조합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합자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아닌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의 조합계약에 따른 민법상의 조합 형태이므로 유한 파트너십이 여전히 현행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석환(2013)은 2012년 개정상법 시행됨에 따른 미국의 LP에 대한 판단을 선불리 입법적 해결로 시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과세실무(각종 예규 및 행정재결 등)와 판례의 집적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국외투자기구와 소득의 실질귀속자

이미현(2015), 안경봉(2014), 오윤·임동원(2015)은 사모투자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독립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단지 무한책임파트너의 자산운용행위를 근거로 해당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1년말 신설된 법인세법 제98조의6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한 규정은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법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주장하면서, LP의 형태를 이용한 펀드에 대해서 소득의 실질귀속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소득의 수령자가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점에 착안할 것이 아니라 투자소득의 운용 및 처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국외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적용

이미현(2015), 안경봉(2014), 오윤·임동원(2015)은 유한파트너십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해도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OECD기준과의 합치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유한 파트너십은 소득발생지국에서도 소득의 도관 내지 통로로 취급하고 실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지현(2016)은 대법원은 적어로 위니아만도 사건에서부터는 OECD에 부합하도록 입장을 바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세조약의 적용이 명확히 문제되는 경우에는 OECD의 입장에 따라 국내법의 소득 귀속에 관한 법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나왔으며, 가분적 거주자 이론은 조세조약 남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혼성단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는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잘못된 결론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실증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가.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인식

(1) 문제점

(가) 법인판단기준의 문제점

2012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라 미국의 LP와 사법상 성질뿐만 아니라 세법상 취급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합자조합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해당 미국 LP를 여전히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 있다(김석환, 20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어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문제점

현재의 대법원 판결처럼, 무한책임파트너인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를 근거로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면, 모든 사모투자펀드는 항상 실질귀속자가 되고 만다(이미현, 2015).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에 대해 규정한 법인세법 제98조의6 규정을 보면, 일정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다)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점

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1항(b)호(ii))상 특별규정에 기반을 둔 동원엔터프라이즈 판결(2012두11836)과 달리, 한·독 조세조약상에는 “투시과세단체”의 거주자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이거 유동화 판결(2013두7711)은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외단체의 외국법인 여부는 납세의무자, 세금의 종류(법인, 소득세법 적용), 세액 등의 적용을 위한 것이고, 조세조약의 적용은 그 이후 각국의 과세권을 제한·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외단체의 외국법인 여부는 조세조약의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2) 가설의 설정

위에서 살펴본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성, 실질귀속자, 조세조약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이해관계인집단의 인식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1)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2)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1-3)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귀무가설 설정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과세관청의 과세사례, 법원의 판례동향, 조세정책당국의 입법동향, 납세자·세무대리인의 불복사례, 학계의 선행연구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가설 1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사법부공무원, 교수·연구원)의 인식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귀무가설의 형태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가설 2와 가설 3도 같은 이유로 귀무가설의 형태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나.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인식

(1) 개선방안

(가) 외국법인 판단기준 개선방안

파트너십 형태의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고시를 통하여 파트너십 형태의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 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 개선방안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국외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수익분배구조 등)을 법인세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 조세조약 적용 개선방안

유한파트너십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해도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OECD기준과의 합치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유한 파트너십은 소득발생지국에서도 소득의 도관 내지 통로로 취급하고 실제 투자자들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 옳다(안경봉, 2014).

(2) 가설의 설정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법인성, 실질귀속자, 조세 조약적용)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사항들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1)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과 관련된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2)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와 관련된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3)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인식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개선방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외국법인 판단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개정, 둘째,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개정, 셋째, 유한 파트너십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다.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위 4개의 개선방안 중에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집단별 인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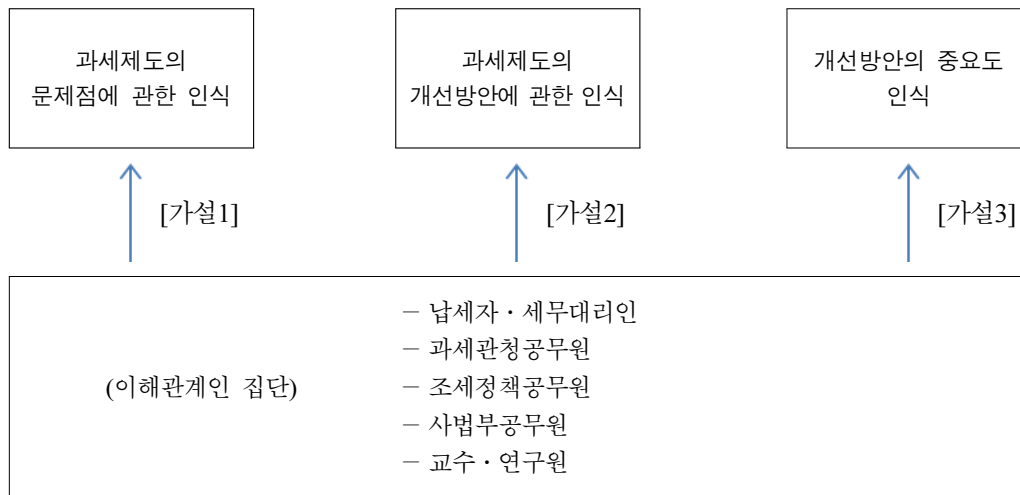
2. 연구모형의 설계

가. 연구모형의 구조

본 연구모형의 구조는 3가지 가설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을 검증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구조



3. 연구대상 및 설문지 구성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와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해관계인은 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사법공무원, 교수·연구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 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납세자·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의 법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고, 과세관청공무원은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세법을 집행하는 측면이 있으며, 조세정책공무원은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며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법공무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행 세법의 해석을 법원판단의 출발점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연구원은 중립적 위치에서 국제적 논의방향 등을 바탕으로 세법을 해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

나. 설문지 구성과 변수 측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외국법인 판단기준에 대한 인식,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인식,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총 27개의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즉,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령과 관련된 인식 10개 문항,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와 관련된 인식 10개 문항, 조세조약 적용에 관련된 인식 7개 문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개별문항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변수의 문항별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변수의 문항별 내용

구 분	측정변수	문항내용	문항수
외국법인 판단기준에 대한 일반적 인식	합자조합	상법개정, 법인세법 해석, 법인세법 개정	8
	국세청장 고시	고시 필요성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국외투자기구의 고유한 특성	존속기간, 수익분배구조	4
		자산관리행위	1
	법인세법 개정	법인세법 해석, 실질귀속자 규정 명확화, 국외투자기구의 특성 반영	4
	외국법인과 실질귀속자 관계	외국법인과 실질귀속자판단은 별개	1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 인식	타이거유동화 판결과 조약적용	조세조약 적용 일반원칙	4
	외국법인과 조세조약 적용 관계	외국법인여부와 조약적용은 별개	2
	가분적 거주자론과 조세혜택 불형평	가분적 거주자론은 투자자를 차별	1

설문지의 배부는 전국단위로 국제조세업무의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사법공무원은 국제조세사건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과세당국자는 국제조세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계의 경우 국제조세협회 회원으로서 국제조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서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2017년 4월 3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200부를 배포하여 우편·이메일 및 직접방문 등으로 134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12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V. 실증연구의 분석

1. 표본의 특성

<표 2>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n=125)	비율(%)	누적비율(%)
분야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5.6	45.6
	과세관청공무원	26	20.8	66.4
	조세정책공무원	18	14.4	80.8
	사법부공무원	6	4.8	85.6
	교수·연구원	18	14.4	100
경력	5년 미만	17	13.6	13.6
	5년 이상-10년 미만	27	21.6	35.2
	10년 이상-20년 미만	47	37.6	72.8
	20년 이상	34	27.2	100
연령	30세 미만	5	4	4
	31-40세	47	37.6	41.6
	41-50세	48	38.4	80
	51-60세	18	14.4	94.4
	61세 이상	7	5.6	100
업무경험	거의 없음	32	25.6	25.6
	1-5회	36	28.8	54.4
	6-10회	21	16.8	71.2
	11-20회	15	12	83.2
	21회 이상	21	16.8	100

먼저,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납세자·세무대리인 57명(45.6%), 과세관청 공무원 26명(20.8%), 조세정책공무원 18명(14.4%), 사법부공무원 6명(4.8%), 교수·연구원 18명(1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조세분야에서의 종사 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7명(13.6%),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7명(21.6%),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47명(37.6%), 20년 이상 34

명(27.2%)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1세 미만이 5명(4%), 31세에서 40세가 47명(37.6%), 41세에서 50세가 48명(38.4%), 51세에서 60세가 18명(14.4%), 61세 이상 7명(5.6%)으로 나타나 30대에서 50대가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업무상 경험은 1회에서 5회가 36명(28.8%), 6회에서 10회가 21명(16.8%), 11회에서 20회가 15명(12%), 21회 이상 21명(16.8%)로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표 3>은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였다. 요인 수에 대한 결정은 아이겐 값(eigen value) 1 이상으로 추출하였으며, 타당성 확보를 위한 누적설명력은 60% 이상 확보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요인적재량 값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5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성 판단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 값 0.6 이상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3〉 과세제도 문제점 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개념/변수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Cronbach's α
외국법인 판단기준	외국법인판단기준1	상법개정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	.845	2.226	0.717
	외국법인판단기준2	상법개정후 합자조합도 외국법인 해당 가능	.911		
	외국법인판단기준3	상법개정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579		
실질 귀속자	실질귀속자1	대법원판결은 국외투자기구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806	2.053	0.769
	실질귀속자3	수익배분기준 고려시 국외투자기구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732		
	실질귀속자4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를 판단근거로 하면 파트너십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	.736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적용1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한독조세조약에 근거 가 없는 문제점	.885	1.228	0.777
	조세조약적용2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조세조약적용 일반원 칙에 맞지 않음	.812		
누적분산			68.838		

KMO=.582 Approximated- $X^2=154.273$, df=28, p=.000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베리맥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3개 요인이 전체 측정변수를 68.8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문항목에 대한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은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각각 외국법인 판단기준 문제, 실질귀속자 문제, 조세조약적용 문제로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법인 판단기준 문제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17, 실질귀속자 문제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69, 조세조약적용 문제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77로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인식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과세제도 개선방안 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개념/변수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Cronbach's α
외국법인 판단기준 개선 방안	외국법인판단기준 개선안1	상법개정후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 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647	1.472	0.764
	외국법인판단기준 개선안2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의 우선순위 정할 필요	.836		
	외국법인판단기준 개선안3	유사성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4호가 원칙	.762		
실질귀속 자 개선 방안	실질귀속자 개선안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여부와 국내원 천소득 실질 귀속자 여부는 별개	.866	2.753	0.780
	실질귀속자 개선안2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시 국외투자 기구의 존속기간, 수익배분구조 고려 필요	.819		
	실질귀속자 개선안3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 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 아님을 명시 필요	.724		
조세조약 적용개선 방안	조세조약적용개선안1	국외단체의 외국법인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인 세법 규정과 BEPS 내용은 바람직	.852	1.248	0.714
	조세조약적용개선안2	OECD 기준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의 transparent entity를 통해 소득을 수령하 는 경우 그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을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839		
누적분산			68.415		

KMO=.681 Approximated- $X^2=240.506$, df=28, p=.000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베리맥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3개 요인이 전체 측정변수를 68.4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각각 외국법인 판단기준 개선방안, 실질귀속자 개선방안, 조세조약적용 개선방안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법인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64, 실질귀속자 개선방안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80, 조세조약적용 개선방안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14로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검증

가.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인식 차이 분석

(1) 이해관계인의 특성에 따른 법인판단기준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표 5>는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의 문제에 대하여 집단별 이해관계인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상법개정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은 상법개정전의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다만, 납세자·세무대리인은 다른 이해관계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그동안의 과세관청의 과세실무(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고 보아 과세)를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해왔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 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긍정적 설문)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판단을 유보하였다. 다만, 사법부공무원은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다소 많이 나타냈다.

반면에, 상법개정 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적 설문)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5.444)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5.056), 납세자·세무대리인(4.456), 사법부공무원(3.333), 과세관청공무원(3.192)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이들 인식은 조세정책공무원, 납세자·세무대리인, 교수·연구원이 높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과세관청공무원과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1]은 기각된다.

〈표 5〉 법인판단기준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문제인식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상법개정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	납세자·세무대리인	57	3.789	1.878	2.132	—
	과세관청공무원	26	4.923	1.958		
	조세정책공무원	18	4.667	2.142		
	사법부공무원	6	5.167	1.472		
	교수·연구원	18	4.389	2.004		
	전체	125	4.304	1.972		
상법개정후 합자조합도 외국법인 해당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070	1.821	1.426	—
	과세관청공무원	26	4.962	1.843		
	조세정책공무원	18	4.000	2.169		
	사법부공무원	6	5.167	1.472		
	교수·연구원	18	4.167	2.121		
	전체	125	4.312	1.924		
상법개정후 합자조합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4호)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456	1.909	5.374**	A, C, E>B
	과세관청공무원	26	3.192	1.744		
	조세정책공무원	18	5.444	1.504		
	사법부공무원	6	3.333	2.066		
	교수·연구원	18	5.056	1.924		
	전체	125	4.368	1.957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 < 0.05$, ** $p < 0.01$

(2) 이해관계인의 특성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표 6〉은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문제에 대한 집단별 이해관계인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은 국외투자기구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익배분기준 고려시 국외투자기구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교수·연구원(6.278)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세정책공무원(6.111), 납세자·세무대리인(5.632), 과세

관청공무원(5.115), 사법부공무원(3.333)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교수·연구원, 조세정책공무원, 납세자·세무대리인은 사법부공무원보다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 소득의 실질귀속자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문제인식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대법원 판결은 국외투자기구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158	1.461	2.445	—
	과세관청공무원	26	5.346	1.765		
	조세정책공무원	18	6.000	0.767		
	사법부공무원	6	4.167	1.722		
	교수·연구원	18	5.667	1.138		
	전체	125	5.344	1.460		
수익배분기준 고려시 국외투자기구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632	1.331	6.722**	A, B, C, E>D
	과세관청공무원	26	5.115	1.946		
	조세정책공무원	18	6.111	0.758		
	사법부공무원	6	3.333	1.751		
	교수·연구원	18	6.278	0.461		
	전체	125	5.576	1.483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를 판단근거로 하면 파트너십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509	1.390	3.093*	C>B
	과세관청공무원	26	4.885	1.558		
	조세정책공무원	18	6.056	0.873		
	사법부공무원	6	4.667	0.816		
	교수·연구원	18	5.833	1.150		
	전체	125	5.464	1.359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0.05$, ** $p<0.01$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를 판단근거로 하면 파트너십 형태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된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제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6.056)이며, 교수·연구원(5.833), 납세자·세무대리인(5.509), 과세관청공무원(4.885), 사법부공무원(4.66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조세정책공무원은 과세관청공무원보다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된다.

(3) 이해관계인의 특성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표 7>은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7>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문제인식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 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한독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는 문제점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193	1.381	6.508*	A, C, E>D C>B
	과세관청공무원	26	4.269	1.801		
	조세정책공무원	18	6.111	1.323		
	사법부공무원	6	3.167	2.229		
	교수·연구원	18	5.333	1.414		
	전체	125	5.056	1.648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조세조약적용 일반원칙에 맞지 않음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667	1.539	2.418	—
	과세관청공무원	26	4.846	2.092		
	조세정책공무원	18	5.667	1.847		
	사법부공무원	6	3.167	1.835		
	교수·연구원	18	4.722	1.934		
	전체	125	4.784	1.821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0.05$, ** $p<0.01$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한독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6.111)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5.333), 납세자·세무대리인(5.193), 과세관청공무원(4.269), 사법부공무원(3.16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사법부공무원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조세정책공무원이 과세관청공무원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거 유동화 판결은 조세조약적용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은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 다만, 사법부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평균 3.167)을 보였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3]은 기각된다.

나.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인식 차이 분석

(1)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외국사모펀드의 외국법인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인식차이 분석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법인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개선방안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 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상법개정후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105	2.006	3.952**	C>B
	과세관청공무원	26	3.615	2.246		
	조세정책공무원	18	5.556	1.504		
	사법부공무원	6	3.167	1.329		
	교수·연구원	18	5.111	2.083		
	전체	125	4.312	2.077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의 우선순위 정할 필요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947	1.493	2.352	—
	과세관청공무원	26	4.385	1.768		
	조세정책공무원	18	5.167	1.823		
	사법부공무원	6	3.167	1.835		
	교수·연구원	18	5.167	1.917		
	전체	125	4.808	1.717		
유사성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제4호가 원칙	납세자·세무대리인	57	4.298	1.511	3.251*	C>D
	과세관청공무원	26	4.462	2.024		
	조세정책공무원	18	5.389	1.614		
	사법부공무원	6	2.667	1.633		
	교수·연구원	18	4.556	1.688		
	전체	125	4.448	1.734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 < 0.05$, ** $p < 0.01$

개선방안으로서 상법개정후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적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5.556),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5.111), 납세자·세무대리인(4.105), 과세관청공무원(3.615), 사법부공무원(3.16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조세정책공무원은 과세관청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개선방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의 우선순위 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평균 4.808)을 나타냈다, 다만, 사법부공무원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평균 3.167)을 나타냈다.

개선방안으로서 유사성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4호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으로 평균 5.389,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 4.556, 과세관청공무원 4.462, 납세자·세무대리인 4.298, 사법부공무원 2.667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조세정책공무원은 사법부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법인판단기준과 관련된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기각된다.

(2)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외국사모펀드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개선방안 인식차이 분석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여부와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개라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6.389), 그 다음으로는 과세관청공무원(5.769), 납세자·세무대리인(5.719), 교수·연구원(5.5), 사법부공무원(4.5)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조세정책공무원은 사법부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시 국외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수익배분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필요성을 인식(평균 5.576)하였다.

법령개정을 통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교수·연구원(6.222), 그 다음으로는 조세정책공무원(6), 납세자·세무대리인(5.719), 과세관청공무원(5.385), 사법부공무원(3.333)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교수·연구원, 조세정책공무원, 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은 사법부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9〉 소득의 실질귀속자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개선방안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 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여부와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개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719	1.424	2.457*	C>D
	과세관청공무원	26	5.769	1.366		
	조세정책공무원	18	6.389	0.778		
	사법부공무원	6	4.500	1.517		
	교수·연구원	18	5.500	1.465		
	전체	125	5.736	1.380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시 국외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수익배분구조 고려 필요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561	1.452	2.294	—
	과세관청공무원	26	5.231	1.451		
	조세정책공무원	18	6.111	1.183		
	사법부공무원	6	4.500	1.517		
	교수·연구원	18	5.944	1.211		
	전체	125	5.576	1.416		
국외투자기구기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아님을 명시 필요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719	1.386	6.172***	A, B, C, E>D
	과세관청공무원	26	5.385	1.444		
	조세정책공무원	18	6.000	1.283		
	사법부공무원	6	3.333	1.633		
	교수·연구원	18	6.222	0.548		
	전체	125	5.648	1.416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0.05$, ** $p<0.01$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와 관련된 개선 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된다.

(3)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외국사모펀드의 조세조약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인식차이 분석

유한 파트너십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서 국외단체의 외국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BEPS 내용은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6.333),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5.944), 과세관청 공무원 (5.538), 납세자·세무대리인(5.439), 사법부공무원(4.5)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조세정책공무원은 사법부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0〉 조세조약 적용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별 인식차이 분석

개선방안	이해관계인	N	평균	표준 편차	F	다중비교 (Scheffe)
국외단체의 외국법인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BEPS 내용은 바람직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439	1.225	3.537**	C>D
	과세관청공무원	26	5.538	1.272		
	조세정책공무원	18	6.333	1.029		
	사법부공무원	6	4.500	1.517		
	교수·연구원	18	5.944	1.110		
	전체	125	5.616	1.256		
OECD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납세자·세무대리인	57	5.684	1.198	6.077**	A, C, D>B
	과세관청공무원	26	4.731	1.589		
	조세정책공무원	18	6.167	0.786		
	사법부공무원	6	4.500	1.517		
	교수·연구원	18	6.056	0.938		
	전체	125	5.552	1.323		

주1) A=납세자·세무대리인, B=과세관청공무원, C=조세정책공무원, D=사법부공무원, E=교수·연구원

주2) * $p<0.05$, ** $p<0.01$

OECD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형태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인식이 가장 높은 이해관계인은 조세정책공무원(6.167), 그 다음으로는 교수·연구원(6.056), 납세자·세무대리인(5.684), 과세관청공무원(4.731), 사법부공무원(4.5)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교수·연구원, 조세정책공무원, 납세자·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공무원에 비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개선방안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된다.

다.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크루스칼-월리스(Kruskal-Wallis)의 순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이해관계인별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차이분석

개선 방안	전체 평균 순위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공무원		조세정책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교수 연구원		X^2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외국법인판단 기준 개정	2.462	57	3.05	26	2.38	18	2.44	6	2.00	18	2.44	13.0**
실질귀속자 규정 개정	1.738	57	1.58	26	1.77	18	1.50	6	2.17	18	1.67	2.614
조세조약 적용 개선	3.144	57	2.96	26	3.04	18	3.50	6	2.83	18	3.39	6.823

외국법인 기준 개정에 대하여 납세자·세무대리인의 경우 평균 순위는 3.05, 과세관청공무원 2.38, 조세정책공무원 2.44, 사법부공무원 2.0, 교수·연구원 2.44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별로 우선순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 기준 개정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이해관계자는 사법부공무원,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및 교수·연구원, 납세자·세무대리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질귀속자 규정 개정과 조세조약 적용 개선 방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해관계자들은 실질귀속자 규정 개정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조세조약 적용 개선 방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상법개정으로 합자조합 제도가 신설된 이후, 현행법상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는 과세관청공무원과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공무원이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해석에 있어서 권한있는 당국자(조세정책공무원, 과세관청공무원, 사법부공무원)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명확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 방향으로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4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각호를 예시적 내용으로 하거나, 각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수익배분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행위만을 판단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세관청공무원과 사법부공무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 집단이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법령개정을 통하여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존속기간, 수익분배구조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국외투자기구 정의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동 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납세자·세무대리인,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이 한·독 조세조약에 근거가 없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보이면서, 국외단체의 외국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조세조약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과 OECD기준 및 BEPS Action2의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사법부공무원은 타이거유동화 판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법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임을 명확히 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파트너십 형태 사모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집단이 실질귀속자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세가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볼 때, 실질귀속자 규정 개정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남규. 2014. “2013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제30권 제2호 : 188-227.
- 곽수현. 2012.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제35권 : 25-63.
- 권기범. 2011. “개정상법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 223-251.
- 기획재정부. 2016. 「2006간추린개정세법」.
- 기획재정부. 2012. 「2011간추린개정세법」.
- 기획재정부. 2014. 「2013간추린개정세법」.
- 김석환. 2013.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문집 제29집 제1호 : 65-104.
- 김석환. 2013.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조세학술논집 제29집 제1호 : 177-212.
- 김지현. 2013. “2012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19권 제1호 : 423-466.
- 김필용. 2015. “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제31권 제2호 : 101-148.
- 박영준. 2015.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과 전망”.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 313-338.
- 송인방. 2012. “개정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3호 : 145-170.
- 안경봉. 2014.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학논고 제47집 : 71-108.
- 안경봉. 2010.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과 세법상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6권 제1호 : 445-483.
- 오 윤. 2016.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 오 윤·임동원. 2015.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 : 139-184.
- 유호림. 2015.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 111-139
- 윤지현. 2016.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3호 : 1-68.
- 윤지현. 2014. “론스타 판결의 의의와 한계”. 조세학술논집 제30권 제3호 : 123-136.
- 이미현. 2015.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조세학술논문집 제31집 제1호 : 141-198.
- 이재호. 2012.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제18권 제3호 : 218-261.
- 이창희. 2015. 「국제조세법」. 박영사.
- 전병욱. 2008.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과세문제의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 제3호 : 139-165.
- 장재형. 2016.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최근 판결과 법인세법 규정의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 299-330.
- 정준혁. 2014.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간 계약의 주요내용-GP와 LP의 이해관계 조정을 중심으로”. BFL 제63권 : 20-39.
- 최준선. 2016. 『회사법』. 삼영사.
- 홍성훈 · 이은별 · 홍민옥. 2014. 국외투자기구 과세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Cumming, Douglas and S. Johan. 2013.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ontracting*. 2nd Ed.. Appendix 1(Sample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ELSEVIER.
- OECD. 1999.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
- OECD. 2010.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 OECD. 2014. *2014 Update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 OECD. 2014.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 OECD. 2015. *Action 2 Final Report.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Travers Smith Braithwaite. 2002.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BVCA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the Taxation System for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Kyu Bum Cho* · Tae Hwa Yoon**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regime for taxing domestic source income of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by analyzing perception gaps among different parties and to suggest appropriate reform measures to make the taxation system more reasonable. It presents an empirical research model, conducted through a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see how five different parties such as taxpayers & tax agent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courts, professors and researchers react to the problems and the reform measure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fter the limited partnership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2012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the MOSF, professors and researchers, taxpayers and tax agents argued that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partnership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foreign corporation, whereas the NTS and the courts disagr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legislation to be revised to clarify its categorization.

Second, the MOSF, professors and researchers, taxpayers and tax agents pointed out that the decision in the Tiger—ABS SPC case has no basis under the Korea—Germany double tax treaty and argued that the tax treatie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BEPS Action 2 and that with regard to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income, the treaties should be applied at the level of the vehicle's investors. However, since the courts disagree,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needs to be amended to specify that the beneficial owner is the investor of overseas investment vehicle, not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tself.

Third, the majority of parties consider the amendment to regulations for determining beneficial ownership as a top priority among potential tax reform measures.

<Key words> Overseas Investment Vehicle, Privat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Foreign Corporation, Limited Partnership, Substantive Owner, Beneficial Owner

* Partner, Deloitte Anjin LLC, starrycho3@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Gachon University, thyoon@gachon.ac.kr, Corresponding Author